○ **(착오거래구제사례)** 아래의 사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제도 적용시에는 결과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례는 착오자가 착오거래 구제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사례1) 선물시장에서 착오거래 구제 시

착오거래 구제가격은 일반적으로 착오발생 직전약정가격에 전일 기초자산 종가의 일정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직전 약정가격이 250p, 전일 코스피200 종가가 245p, 착오거래구제비율이 3%라면, 착오거래 구제가격은 250±7.35p(245p×3%)로 계산되어 257.35p 또는 242.65p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착오로 260.00p에 매수, 240.00p에 매도거래가 발생했다면, 해당 매수가격은 257.35p로, 매도가격은 242.65p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오상대방의 약정가격도 동일하게 정정됩니다.

(사례2) 옵션시장에서 착오거래 구제 시

착오거래 구제가격은 일반적으로 착오발생 직전 기초자산가격에 해당가격의 일정비율을 더하거나 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착오발생 직전 코스피200지수가 250p, 착오거래구제비율이3%라면, 착오거래 구제가격은 코스피200지수가 250±7.50p(250p×3%)인 경우인 경우, 즉 코스피200지수가 257.50p 또는 242.50인 경우 해당 종목의 이론가격으로 산출됩니다. 콜옵션 A종목의 경우 지수가 257.50p인 경우의 이론가격이 3.00p이고 지수가 242.50p인 경우의 이론가격이 1.00p인 상황에서, 착오로 4.00p에 매수, 0.50p에 매도거래가 발생했다면 해당 매수가격은 3.00p로, 매도가격은 1.00p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오상대방의 약정가격도 동일하게 정정됩니다.

○ **(반대매매 시 손실 사례)**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 직전약정가격이 250.00p였는데, 통상적인 시장가격에서 벗어난 260.00p에 매도거래가 체결되었다면 이 투자자는 빨리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 다소 불리한 가격인 259.00p에 반대매매(매수)하여 1p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체결된 260.00p 거래가 착오거래구제로 확정되어 가격이 257.35p로 정정된다면 이 투자자는 1p 이익이 아닌 1.65p(=259.00p(매수가격)-257.35p(매도가격))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정에서 별도로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가 없으니 착오거래에 대한 반대매매 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확인란>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명 : 인/서명

※ 추가적인 설명을 원하시면 거래하시는 지점을 내방하시거나, 고객센터(1577-26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